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1-15관련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1. .

발 의 자 : 이필레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수당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제6조제5항 중 “수당의 1/2 삭감”을 삭제함.

나. 제18조의 제목 “(수당)”을 “(실비 등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”를 “지급하는 실비 등 지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로 함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5항 중 “수당의 1/2 삭감”을 삭제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수당)”을 “(실비 등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”를 “지급하는 실비 등 지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로 한다.

